

# 탄소중립지원센터 규정

제정 2023. 05. 15.

제1차 개정 2023. 09. 11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명칭)** 이 센터는 상지대학교 **탄소중립지원센터**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라 한다. (개정 2023.09.11.)

**제2조(목적)** 센터는 탄소중립, 녹색성장,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,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학문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소재지)** 센터는 상지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시행
2. 탄소중립 관련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
3. 정부·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
4. 수송, 건물, 폐기물, 농업·축산·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
5.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역량 강화
6.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정보 및 통계의 작성
7.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5조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에는 연구원의 임면, 연구사업의 계획과 수행, 예산 및 결산,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, 기타 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은 본교의 교직원,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.

**제7조(간사)**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별도의 사무직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**제8조(연구원 등)** 연구원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교수·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른다.

**제9조(연구보조원)**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**제10조(회의)**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정리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1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교외 연구비와 수탁 연구비
2. 교내 연구비
3. 정부·지자체·대학의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
4. 기타 수입

**제12조(회계연도 및 예산·결산)**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
②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3조(규정 개정 및 해산)** ① 센터의 규정 개정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센터가 해산되는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**제14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설연구소(원)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연구교수·연구원 임용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5조(지침 등)**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부칙**(기획예산팀-1123, 2023.05.16.)

이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(기획예산팀-1896, 2023.09.11.)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